E - 60 - 2012

# 수변전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0 작성자: 한국전기공사협회 임승학 이사

o 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o 제·개정 경과

- 2010년 11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12년 4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o 관련규격 및 자료

- NESC 12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Equipment

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

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 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월 2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60 - 2012

# 수변전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#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수변전실 전기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있어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수변전실 전기설비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부정전위"라 함은 전위는 존재하나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전위를 말한다.
  - (나) "유자격자(Qualified person)"라 함은 「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」제3조의 별표 1에 의한 다음 1의 자격·면허·기능 또는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한다.
    - ①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전기기능사・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
    -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
    - ③「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
    - ④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
  - (다) "작업자"라 함은 전기설비 설치·정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  - (라) "활선"이라 함은 설비가 전기 에너지원에 연결됨으로써 전압을 보유한 상태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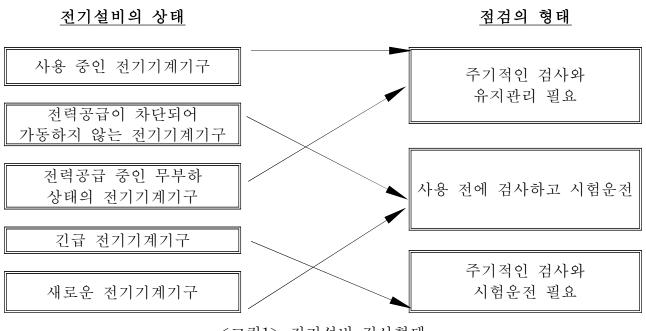
E - 60 - 2012

말한다.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4. 전기설비 검사 시 요구사항

(1) 수변전실 전기설비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<그림1>과 같다.



<그림1> 전기설비 검사형태

- (2) 전기설비의 장비나 배선에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.
- (3) 검사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, 검사 완료 후 정확한 기록과 공정 일지를 유지해야 한다.
- (4) 기타 검사에 관한 방법, 항목 및 검사 주기 등은 "전기사업법"을 준용한다.

E - 60 - 2012

# 5. 보호접지

- (1) 보호접지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은 "전기설비기술기준"을 준용한다.
- (2) 수변전실의 비전도성 금속부분이라도 보호접지하거나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금속울타리도 접지하여야 한다.
- (4) 금속체, 모선, 전기기계기구에 전기에너지를 차단하고 수리·보수하는 동안에도 접지하여야 한다.
- (5) 접지는 접지단자함을 통한 영구적인 방법과 휴대용 접지점퍼를 사용한 임시방법을 이용한다.

## 6. 충전부 보호

## 6.1 방호범위

- (1) 수변전실 내 지락으로 인한 전위상승에 우려가 있는 장소나 충전부는 방호하거나 수직·수평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부주의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수변전실 유자격자의 주된 근무 장소와 전기설비는 서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.
- (3) 전기설비의 활선부분과 작업자의 신체 보호장비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.
- (4) 수변전실에 변압기, 배전반 등 설치 시 최소 이격거리는 "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"을 준용하여 <표 1>과 같다.

KOSHA GUIDE E - 60 - 2012

<표 1> 수변전실 전기설비의 최소이격거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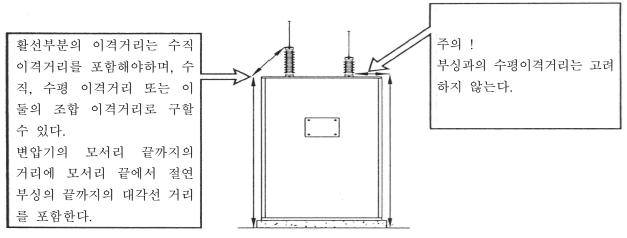
부위별 기기별	앞면 또는 조작, 계측면	뒷면 또는 점검면	열상호간 점검면	기타의 면
특고압반	1,700mm	800mm	1,400mm	_
고압배전반	1,500mm	600mm	1,200mm	_
저압배전반	1,500mm	600mm	1,200mm	_
변압기 등	1,500mm	600mm	1,200mm	300mm

(5) 수전점의 부싱 최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에는 수전전압에서부터 0 V 사이의 부정 전위를 보유한 상태로서, 수변전실 설계·점검 시 기계기구의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는 "전기설비기술기준"의 제31조를 준용하여 <표 2>와 같다. 제시된 이격 거리를 맞추기 위해 별도의 받침대를 설치하여 기계기구의 높이를 높이거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<표 2>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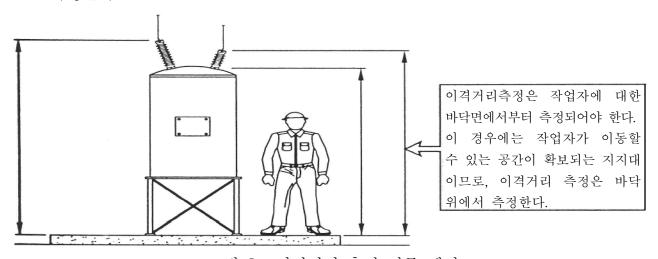
사용전압의 구분	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	
35kV 이하	5m	
35kV 초과 160kV 이하	6m	
160kV 초과	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	

(6) <그림 2>와 같이 활선부분의 이격거리는 수직·수평 이격거리와 이 둘의 조합으로 구한다. E - 60 - 2012



<그림 2> 이격거리 측정기준 예시(수직, 수평거리 합)

(7) <그림 3>와 같이 변전소의 콘크리트바닥이 작업자가 이동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면 콘크리트바닥 면에서부터 이격거리를 측정한다. 그러나 콘크리트바닥이 전기설비만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격거리는 수변전실 바닥부터 측정한다.



<그림 3> 이격거리 측정 기준 예시

- (8) 통로, 복도, 창고와 같이 물건들이 이동하는 곳에는 추가 이격거리 확보와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9) 작업자들은 공구나 열쇠 등과 같은 금속체를 휴대해서는 안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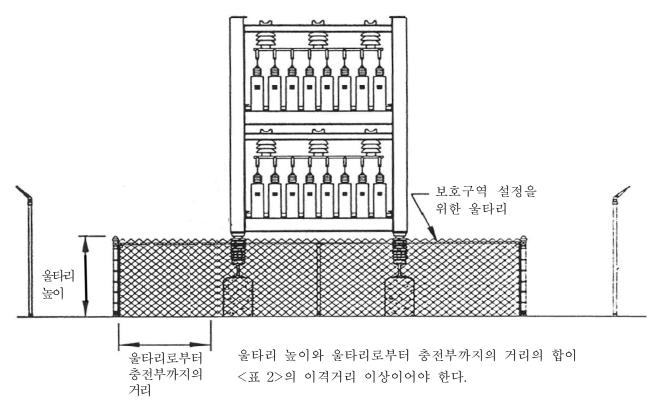
#### 6.2 방호강도

KOSHA GUIDE E - 60 - 2012

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호막·차단막 등을 사용하여 사람이 떨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방호막·차단막을 파손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# 6.3 보호유형

- (1) 전기설비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.
  - (가) 방호하려는 장소의 입구를 차단하기 위해 격벽을 치거나 테두리를 줄로 연결해 접근금지 표시를 붙여야 한다.
  - (나) 울타리로 보호구역으로 이용할 때에는 <표 2>에 의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 그 예시는 <그림 4>와 같다.



<그림 4> 이격거리 측정 예시

#### 6.4 전기설비 사용상의 안전

E - 60 - 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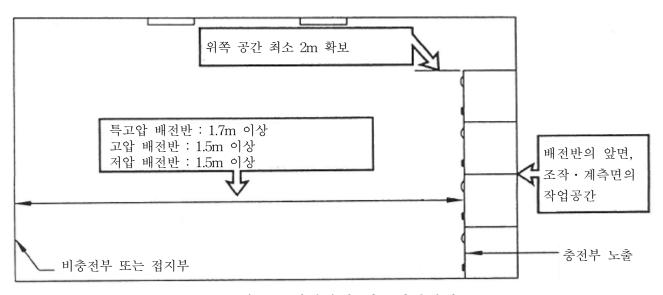
- (1) 전기설비를 사용할 때 감전 또는 화상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·제조·설치 및 정비하여야 한다.
- (2) 감전 또는 화상재해 방지조치가 없는 전기설비의 사용자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 (3) 노출형 배전반·퓨즈반 및 배전용 철 구조물 등의 설비들은 유자격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보안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. 이러한 설비에는 불의의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사용전압이 낮은 저압설비는 도체가 과열되어 전기아크나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.
- (5) 물기·습기 또는 분진 등 전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설비의 선정과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(6)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폭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7) 전기설비는 주의깊은 설계, 기기의 선정, 이격거리의 확보 및 연동장치의 적용 등에 의하여 작동상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8) 제어반은 시운전, 고장부위 찾기, 교정 등의 작업 시에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절연된 도체와 덮개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9) 설비 내에 전원선과 제어선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7. 전기설비와 관련된 작업공간

#### 7.1 작업공간(600 V 이하)

E - 60 - 2012

- (1) 전기설비 주위에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내부기기의 인출을 대비하여 점검·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- (가) 600 V 이하 배전반의 작업공간은 <표 1>과 같으며, 위쪽 공간은 2 m 이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.
  - (나) 콘크리트벽, 벽돌벽, 타일벽 등은 접지면으로 취급해야 한다. 단, 석고벽은 예외로 한다.
- (2) 배전반의 부품교환, 전선접속 등이 앞면에서 가능하다면 뒷면의 작업공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뒷면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3) 충전부가 노출된 전기설비의 작업공간은 <그림 5>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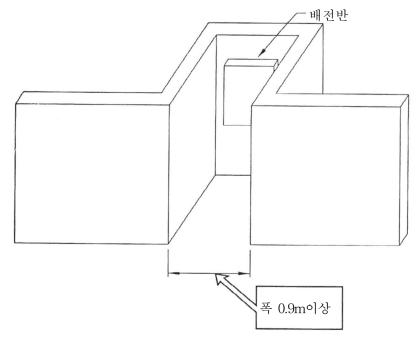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5> 배전반의 최소이격거리

- (4) 작업공간이 개구부나 통로에 위치해 있을 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작업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.
  - (가) 작업자가 무리 없이 통행하기 위하여 <그림 6>과 같이 0.9 m 이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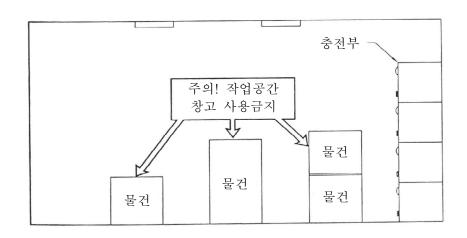
E - 60 - 2012

(나) 작업공간으로 접근하는 입구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한다.



<그림 6> 작업공간의 최소 폭

(5) 작업공간을 창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.(<그림 7> 참조)



<그림 7> 저장물건들의 작업공간 사용금지 예시

# 7.2 작업공간(600 V 초과)

E - 60 - 2012

600 V 초과하는 배전반의 전기설비 작업공간은 <표 2>에 따른다.

#### 8. 활선작업 및 장비

#### 8.1 보호장비 착용

작업자가 <표 2>에서 제시한 충전부와의 이격거리이내에 있다면, 작업자는 공인된 시험을 통과한 활선 보호성능을 갖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.

#### 8.2 활선 및 정전작업에 공통되는 조치

#### 8.2.1 관리감독자의 행동

- (1) 안전작업계획에는 관리자 및 작업자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.
  - (가) 관리와 감독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, 작업자가 모두 행하는 경우도 있다.
  - (나) 도급을 줄 경우 작업개시 전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정하여야 한다.
- (2) 전기작업의 관리감독은 관련 작업에 대한 위험상황과 기술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.
  - (가) 감독자는 전기안전 지식이 있어야 하며 책임과 의무는 사업주에 의해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.
  - (나) 감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  - (다) 여러 그룹이 작업에 투입된다면 감독자는 그룹의 작업을 조정하고,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감독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

E - 60 - 2012

한다.

- (라)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는 문제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. 그룹작업에서는 한 사람에게 전체 감독책임을 주고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그 내용을 인지하여야 한다.
- 8.2.2 활선 또는 활선근접작업이 이루어질 전선로 또는 설비의 확인
  - (1)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소요 시간은 작업 전에 취하는 조치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. 이때 안전작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도 고려되어야한다.
    - (가) 현장 확인, 작업관련 도면 및 정보
    - (나) 7.4항에서 언급된 전기설비 사용상의 안전
  - (2) 작업 대상기기와 작업내용 확인 시 활선상태로 할지 정전상태로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  - (가) 활선작업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.
    - (나) 정전 또는 활선작업에 관계없이 9.2항의 공통되는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# 9. 특수장소

- (1) 특수장소는 가연성 가스, 증기, 액체, 먼지, 섬유 등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다.
- (2) 수변전실 근처 특수장소에서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- (3) "전기설비기술기준"에서 제시된 조건 이외에 수변전실이 위치해 있는 근처에 석탄을 다루는 지역이나 다양한 다른 위험지역 등에서는 안전을 위한 더 많은 고려사항이

E - 60 - 2012

발생할 수 있다.

- (가)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줄이기 위해 전기설비를 위험지역으로 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 특히 고압전기설비는 특수장소와 충분히 이격시켜야 한다.
- (나) 600 V 이하의 전기설비는 폭발방지설비를 하거나 "전기설비기술기준"에 적합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## 10. 명판

- (1) 수변전실의 배전반과 외부장치는 명판 표시를 하여야 한다.
  - (가) 명판은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나) 명판에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전압, 장비명칭, 배선색상, 간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